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1
----------	-----

2023. 3. 24.(금)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용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3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3월 17일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용규 의원)

###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 (안 제4조)
-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 가. 조례 제정이유

- 2002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sup>11)</sup>이 2023년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며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고<sup>12)</sup>, 2020년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sup>13)</sup>이 시작된 이후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해 있는 상태임.
- 이같이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21년 10월 19일 ‘인구감소지역 89곳’ 을 지정<sup>14)</sup>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1) OECD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3이하인 현상

12)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보고서: 2023~2026년 기간 우리나라 총인구는 연평균 0.11씩 감소하고,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6명에서 2026년 0.69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함

13)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

14)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제정과 함께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의 재원을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3곳)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곳)	남구, 서구
인천(2곳)	강화군, 옹진군
경기(2곳)	가평군, 연천군
강원(12곳)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곳)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곳)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곳)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곳)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곳)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곳)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충북은 현재 11개 시군 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제천, 단양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음성과 충주도 인구감소 우려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충북의 2/3이상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지역은 지역의 학령 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이 초래되어 충북교육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21세기 지방자치시대의 학교교육은 단순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및 사회·문화·체육 등 지역공동체 활동 확대를 통하여 지역사회 유지 및 지역발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역의 학력격차,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격차는 학령기 자녀를 둔 주민의 정주여건을 악화시키고, 인구 유입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폐교와 학교통폐합을 초래하며 지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충북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는 충북의 존폐를 위협하는 절박한 문제로서 도와 지자체는 물론 충청북도교육청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공동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 교육기반 확충 규정<sup>15)</sup>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

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그 분교를 폐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습형 일자리 창출
2. 고용과 복지의 연계
3. 해당 지역의 현안

도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 시기성이 인정되는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됨

- 현재 교육부의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교육지원 관련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과 현황, 요구들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정과 같은 선제적 대응은 매우 바람직하며 고무적이라 사료되며,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관련 교육청 조례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북, 전남, 경남, 경북, 강원 등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 타 시도교육청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시한 것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사업 추진 목적을 공고히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4조에는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 안 제5조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예산 확보와 예산을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운영·관리하도록 규정한 것과 안 제7조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 등을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인구감소 지역 교육지원 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 예산 지원을 조례 제정 즉시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은 인구감소지역에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사료됨

-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8조는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협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충청북도교육청 간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 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칙 제2조에는 본 조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재양’,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

위기론' 까지 대두되며 우리나라 인구감소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최고의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례 제정이라 사료되며,

- 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 충청북도교육청은 기존에 충청북도 교육균형 발전을 위해 지원해 오던 사업 대상이 인구감소지역과 중복되거나 확대<sup>16)</sup>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에 근거하여 교육균형발전 지원 사업을 인구감소지역 교육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본 조례안의 비용 추계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실효성 있는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구감소지역(행안부, '21. 10 .19.)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대상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2021]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2022] 보은, 영동, 괴산, 단양

16)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 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

3. 저소득·다문화·탈북 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 등 심의)** ①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 관계 법령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약칭:인구감소지역법)

[시행 2023. . 1.] [법률 제18787호, 2022. 6. 10., 제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

학교 및 그 분교를 폐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습형 일자리 창출
2. 고용과 복지의 연계
3. 해당 지역의 현안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제16조에 따른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중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에 대하여 같은 법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⑫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대한 지원 또는 보조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16호, 2022. 12. 27., 제정]

제10조(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감은 법제22조제6항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그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

[시행 2023. 1. 1.]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4. 1. 7., 2015. 7. 24., 2017. 3. 21., 2018. 3. 20., 2020. 4. 7., 2020. 12. 8., 2021. 12. 21., 2022. 2. 3.>

1.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 1의2.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 1의3. “지역균형뉴딜”이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3.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4.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시·도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5. “초광역권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6.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 나.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다만, 성장촉진 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 사업지역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8. “농산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을 말한다.
- 8의2. 삭제 <2021. 8. 17.>
9.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지원

## 2. 비용 발생 요인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

## 3. 관련조문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
3.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4.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예산지원

나. 추계 결과

1) 최근 3년 간 교육균형발전 예산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시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은	514,910	560,048	579,208	589,352
옥천	542,944	588,740	590,941	
영동	644,191	654,579	671,148	353,946
괴산증평	585,556	609,699	547,324	
괴산				281,423
단양	453,440	583,419	611,379	596,819
합계	2,741,041	2,996,485	3,000,000	1,821,540

2) 인구감소지역 교육 예산지원 대상지역

(1) 대상: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2) 지역별 평균 지원액

(단위: 천원)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평균지원액	456,840	499,414	500,000	455,385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2,763,08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보통교부금	2,763,08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세 출	2,763,08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인구감소지역 예산지원	2,763,08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재원 조달	2,763,08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의존 재원	소 계	2,763,08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2,763,08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